

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) 법 제19조제13항에서 "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.

1.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, 주택가 등의 지역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개방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물
2.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개방주차장으로 지정이 필요한 시설물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8조의2(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) 법 제19조제13항에서 "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.</u> <u>1.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, 주택가 등의 지역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개방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물</u> <u>2.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개방주차장으로 지정이 필요한 시설물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도시교통과	
연 락 처	044-201-3814